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불법행위로 발생된 법원읍 법원리 산39-1번지 일원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와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 잔여 공원시설계획 부지를 매입하고 수방대책을 완료하여 특별한 시설물 없이 즐기는 운동시설을 설치하며,
- 지반이 안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00년 3월 경매로 취득한 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기 위함.

□ 주요골자

(단위 : 원)

구 분	취득의 재산명	위 치	면적 (㎡)	금 액	공시지가 (㎡당가격)
시유재산	임 야	법원읍 법원리 산39-1	8,938	172,503,400	19,300
	임 야	법원읍 법원리 385-11	5,360	28,300,800	5,280
	소 계		14,298	200,804,200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지 방 자 치 법

제35조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동 변경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 규정에 의거 법원4리 근린공원 조성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건은 사전 승인없이 2000년 3월 경매로 취득한 건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있으나, 동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52회 임시회의시 사후 취득승인을 받도록 권고한 사항임.

나. 내용타당성

- '96. 9. 26 산림형질변허가를 득하였으나 '97. 6. 14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무단 방치된 법원읍 법원4리 산39-1번지 일원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두 필지가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차이가 3배가 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